

특정감사 결과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첩된 민원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감사기간: 2016. 1.12.(화)~2016. 1.14.(목) / 3일간
- 감사인원: 2명
- 지적사항: 훈계 8, 경고 1

2016. 1.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 중점사항	2
II. 감사결과	2
1. 총평	2
2. 지적사항 총괄	3
3. 분야별 지적사항	3
4. 행정사항	4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4
IV. 개별 처분요구사항	4
1. 복무규정 위반	4
2. 복무 관리감독 소홀 등	4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2부.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특정감사는 복무규정 위반 사례(점심식사 시간 음주행위)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리 공사로 이첩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행위 발견 시 엄정한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제보 개요

○ 일 자: 2016.01.07.(목)

○ 제 보: 공정거래위원회(2016. 1. 7.) → 국민신문고

○ 이 첩: 공정거래위원회(2016. 1. 7.) → 한국국토정보공사

○ 제 목: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점 - 점심시간 음주』

○ 내 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12명이 2016년 1월 4일 12경 ◆◆시 소재 ㉠㉠ 소고기 국밥집에서 점심식사 겸 음주(막걸리와 소주 6병) 후
-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한 달 외상 장부로 정리하여 회사 돈으로 결제 하였습니다.

2. 감사대상 기관

○ ○○지역본부 ○○지사

3. 감사기간 및 구성

○ 감사기간: 2016. 1.12.(화) ~ 2016. 1.14.(목) / 3일간

○ 감 사 반 : 감사실 국토정보직○급 한○○ 외 1인

4.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국민신문고 제보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음.

- 복무규정 및 제 규정 준수
 - 품위유지 위반(음주)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특근 매식비 집행의 적정 여부
 - 관련서류 조사를 통한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II

감사결과

1. 총평

- (점심시간 음주행위 사실관계) 2016. 1. 4.(월) ◆◆지사 직원 12명 중 8명이 점심시간에 식사 겸 음주(막걸리1병, 소주6병)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사의 명예 훼손과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식대를 회사 돈으로 결제 했는지 여부) 2016. 1. 4.(월) 12시 경 “◆◆지사 직원 12명이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대금을 회사 돈(특근매식비)으로 결제하는 장부로 정리하였다.” 라는 제보는 사실과 달리 ◆◆지사 직원들은 특근 시 특근매식비로 집행하는 장부와 사무실 내근 시 점심 식사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기록하고 월말 특근 관련 식대는 법인 카드로, 일반 점심 식대는 개인별 현금결제 하고 있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현지 처분	제도 개선	모범 사례 (건수)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중징계	경징계	문책			
건수	2	0	0	0	0	0	0	0	0	9	0	0	0

3. 분야별 지적사항

3-1. 관련자: 국토정보직○급 김○○(57세), 국토정보직 ○급 최○○(53세)
 국토정보직○급 이○○(55세), 국토정보직 ○급 최○○(52세)
 국토정보직○급 김○○(48세), 국토정보직 ○급 강○○(43세)
 국토정보직○급 최○○(41세), 국토정보직 ○급 천○○(38세)
 이상 8명

□ 복무규정 위반(음주)

○ 관련자 8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4. 점심시간 음주행위로 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 및 제3호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 시켰다.

3-2. 관련자: 지사장 국토정보직 ○급 이○○

□ 복무 관리감독 소홀

○ 소속 직원 8명이 2016. 1. 4.(월) 12시 경 점심식사 겸 음주(막걸리1병, 소주6병)를 한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제보 되었다.
 ○ 이는 직원들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 평소 제 규정·규칙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직원교육과 이행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의 명예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 행정사항

- (조치사항) 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처)
- (감사결과 공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e-감사시스템, 홈페이지 공시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 현황

일련 번호	관계기관	내 용	처분요구 등 종류			비고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1	○○지역본부 ○지사	복무규정 위반(음주)	문책(훈계)			8명
2	“	복무 관리감독 소홀 등	문책(경고)			1명

IV 개별 처분요구 사항

1. 복무규정 위반 (국토정보직○급 김○○ 등 8명)
2. 복무 관리감독 소홀 (국토정보직○급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 책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위반(음주)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문책 대상자 국토정보직 ○급(김○○, 최○○, 이○○, 최○○)

국토정보직 ○급(김○○, 김○○, 최○○)

국토정보직 ○급 천○○

문 책 종 류 훈계

문 책 사 유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에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 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호에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라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말연시 복무기강 유의사항 알림” ●●●●실-1161(2015. 12. 28.)」 호로 연말연시 송년회, 시무식 등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를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등 12명이 2016. 1. 4. 점심시간

에 식사와 함께 음주(소주6병, 막걸리1병)를 하였다는 제보가 2016. 1. 7.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6. 1. 7.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첩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관련자 12명 중 8명(김○○, 최○○, 이○○, 최○○, 김○○, 강○○, 최○○, 천○○)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음주 관련자 현황

순 번	소 속	직.성 명	근무기간 (현 근무지)	담당업무	귀책사유	비 고
1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	'15. 2. 4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2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최○○	'14. 1. 24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2잔
3	경남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이○○	'14. 1. 24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4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최○○	'12. 2. 13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6잔
5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	'11. 2. 1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막걸리 2잔
6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강○○	'15. 2. 4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7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최○○	'14. 1. 24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8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천○○	'14. 1. 24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소주 3잔

따라서 관련자 국토정보직 ○급 김○○ 등 8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 시켰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장(☐☐처장)은 「인사규정」 제45조 및 「징계규칙」 제8조, 「직원경고등 처분에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관련자 국토정보직 ○급(김○○, 최○○, 이○○, 최○○), 국토정보직 ○급(김○○, 김○○, 최○○), 국토정보직 ○급 천○○를 문책(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 책 요 구

제 목 복무 관리·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문책 대상자 국토정보직 ○급 이○○

문 책 종 류 경고

문 책 사 유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장은 기관운영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에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 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호에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라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말연시 복무기강 유의사항 알림” ●●●●실-1161(2015. 12. 28.)」 호

로 연말연시 송년회, 시무식 등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를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지사 소속 국토정보직 ○급 김○○ 등 12명이 2016. 1. 4. 점심시간에 식사와 함께 음주(소주6병, 막걸리1병)를 하였다는 제보가 2016. 1. 7.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6. 1. 7.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첩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관련자 12명 중 8명 (김○○, 최○○, 이○○, 최○○, 김○○, 강○○, 최○○, 천○○)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음주 관련자 현황

순 번	소 속	직·성 명	근무기간 (현 근무지)	담당업무	귀책사유	비 고
1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	'15. 2. 4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2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최○○	'14. 1. 24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2잔
3	경남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이○○	'14. 1. 24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4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최○○	'12. 2. 13 ~ 현재	측량팀장	음주 (점심시간)	소주 6잔
5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	'11. 2. 1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막걸리 2잔
6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강○○	'15. 2. 4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7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최○○	'14. 1. 24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소주 4잔
8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천○○	'14. 1. 24 ~ 현재	측량팀원	음주 (점심시간)	소주 3잔

위와 같이 국토정보직 ○급 이○○은 ○○지사 총괄 책임자인 ○○○으로서 지사운영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소속 직원의 음주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제보 되는 등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장(□□처장)은 「인사규정」 제45조 및 「징계규칙」 제8조,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관련자 국토정보직 ○급 이○○을 **문책(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